통권 405호

2017 5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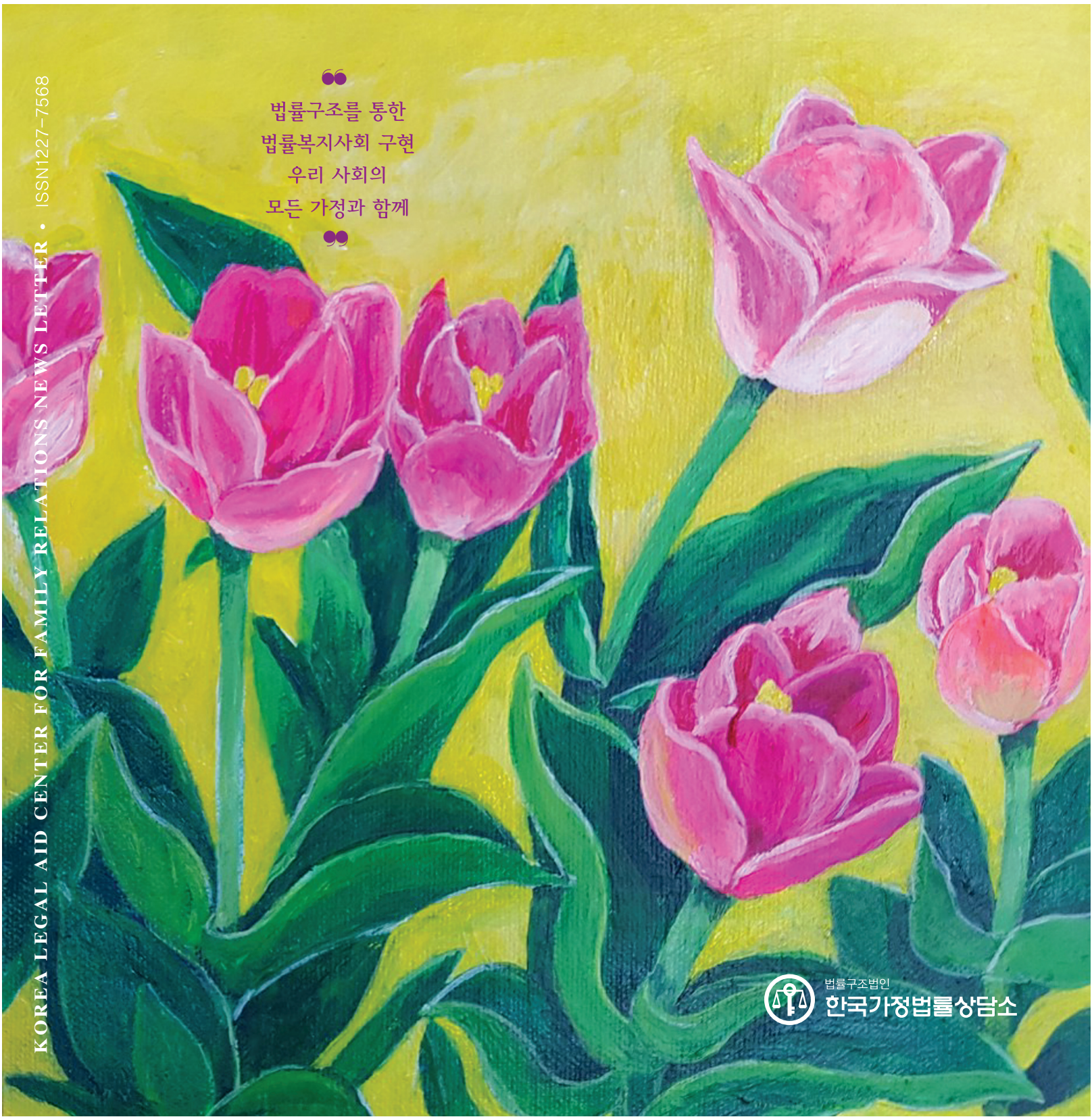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본소는 지난 4월 4일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승국), KEB하나은행(신탁사업단장 김재영)과 본소 대회의실에서 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관련기사 32면)

본소에서는 여의도 봄꽃축제를 맞아 지난 4월 6일 윤중로에서 영등포 경찰서와 함께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련기사 32면)

본소 교육부는 지난 3월 314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비혼모 62가정과 함께 에버랜드로 1박2일 캠프를 다녀왔다. (관련내용 26면)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6년도 상담 통계 – 다문화 가정
14 • 특집 Ⅱ |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심포지엄 ❷
22 • 가정폭력상담실
26 • 교육부
30 • 인터넷 상담
31 • 좋은 책
82년생 김지영
32 • 상담소 소식
34 • 결혼과 인생(171) 만화일기
우라가 원하는… _ 장차현실
35 • 지부 소식
36 • 상담통계
37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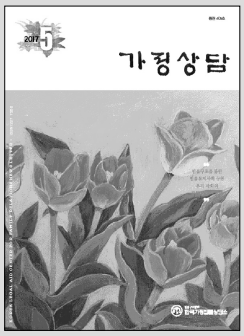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17. 5.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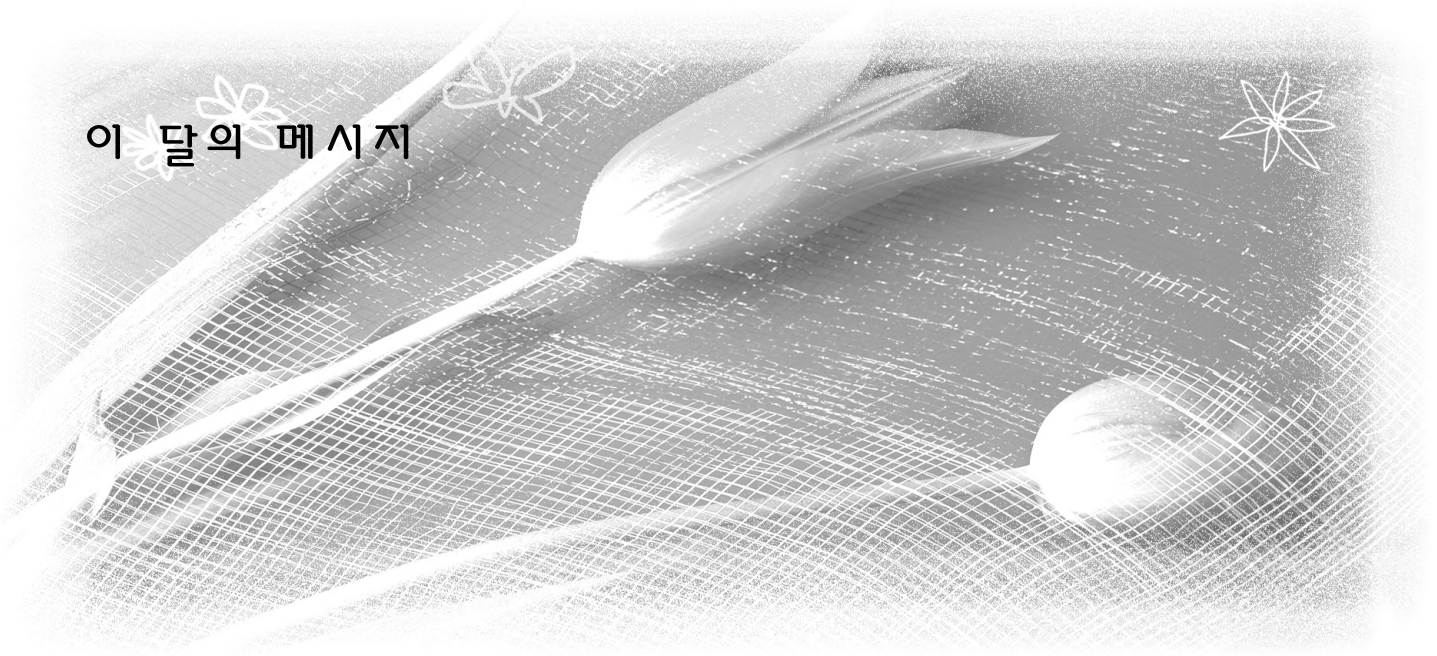

새 정부는 사회의 근간이 '가정'이라는 점을 모든 정책의 바탕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은 이른바 '장미대선'을 앞두고 쓰고 있지만, 이 글을 받아 보실 즈음에는 새 정부의 윤곽이 드러나 있을 것입니다. 불투명한 현실 앞에서 그래도 분명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지난 국정농단 사태로 일그러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을 때라 여겨집니다.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경제상황, 북핵을 둘러싼 외교, 안보의 문제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와 선거 시기를 거치면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야하는 과제 등 다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 정부는 굳건한 의지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 험난한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복리,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라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은 결국 국민 개개인 나아가 가정과 그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없다면 국가

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과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에 주목하고 한 사람, 한 가정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 또한 이를 바탕에 놓고 구상하여 기획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시기, 한 때는 여성과 가족정책에 있어 역대 정부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기대마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정권 4년간을 돌아보면 우리 나라 가족, 여성정책은 제자리걸음 수준이거나 한 단계 후퇴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국정의 방향이 국민들의 삶을 향해있지 않았고, 가정 문제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했거나 어쩌면 아예 그럴 의지조차 없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대선을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좋은 일자리, 확고한 안보태세, 국민이 행복한 나라, 문화적 융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사실 그 방향과 목표는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었던 이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돌이 갓 지난 자녀를 구타해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아기까지 자녀가 모두 셋이었으나 이들은 모두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정해체로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살아 왔다는 아이 아빠, 역시 가정해체를 겪으면서 고등학교 때 가출하여 일찍 아이 엄마가 된 여성, 이들 부부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자녀 셋을 방치하고 학대해 왔습니다. 가정과 사회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책임 있는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불행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불행한 삶을 반복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애쓰고, 인구절벽의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것은 개인과 가정의 삶을 제대로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제대로 바르게 된 가정과 개인이 민주적이고 발전된 사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적 의제의 근간에 가정의 중요성과 아직까지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의 인권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 선출된 행정부의 수반이자 최고 결정권자에게 가정과 여성문제의 중요성이 정확하고 깊이 있게 각인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가정문제를 가장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의 수립과 개선에 집중해온 상담소는 지난 60년의 시간을 통해, 사회의 진정한 발전이란 여성과 가정이 바로 서야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제언하는 바입니다.

아내가 초혼인 줄 알았는데 애 엄마?
내가 돈 주고 사온 물건인가요?

2016년 한 해 동안 상담소 본부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총 건수는 1,478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955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523건이었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전체의 64.6%였고,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35.4%였다.

※ 다문화가정 부부의 특성

남편이 17세~30세 이상 연상인 경우 20.2%
재혼가정 비율 34.2%
한국인 남편의 68.1%, 외국인 아내의 82.7% 월수입 없고
한국인 남편의 80.3%, 외국인 아내의 92.5%
보유재산 없어 매우 빈곤

※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의 주요 발견 사항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건수 폭발적으로 증가
10년 전에 비해 한국인 남편 36배,
외국인 아내 3.3배 증가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이
1.8배 더 많아
혼인신고 후 37.9% 별거 중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가출, 외도 호소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폭력, 가출 호소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실제 이혼한 다문화가정(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중
93.8%가 본 상담소 방문해 이혼상담 받아

통계청에서 3월 22일 발표한 2016년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전국 이혼 건수는 5,610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총 1,018건이었다. 본 상담소 서울 본부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건수는 955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의 약 93.8%에 달해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상담소를 거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혼 건수는 감소했어도
이혼상담 건수는 오히려 증가
나이 차이, 경제적 여건 등 한국인들끼리 혼인한
일반가정보다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유발 요인 더 많아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실제 이혼 건수는 2015년 5,743건에서 2016년 5,610건으로 약 2.3% 감소한 반면, 본 상담소의 이혼상담 건수는 2015년 925건에서 2016년 955건으로 약 3.2% 증가하였다. 이는 여전히 다문화가정 내에 갈등이 많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혼상담을 한 다문화가정 내담자들은 한국인들끼리 혼인한 일반가정보다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유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 상담소에 이혼상담을 받으러 온 일반가정과 비교해보면, 연령면에서 일반가정은 남편이 1~2년 연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던 반면에 다문화가정은 남편이 17~30년 연상인 경우가 가장 많아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간 연령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남편이 17~30년 연상, 일반가정 3.2% / 다문화가정 20.2%). 혼인형태면에서도 재혼비율이 일반가정은 16.6%였으나 다문화가정은 34.2%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재혼비율이 2.1배 가량 높았다.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경우도 일반가정은 남편이 63.7%, 아내가 67.1%였으나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이 68.1%, 외국인 아내는 82.7%로 더 높게 나타났고, 보유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도 일반가정은 남편이 77.8%, 아내가 71.4%였으나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이 80.3%, 외국인 아내는 92.5%로 더 높게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간의 나이 차이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심했고, 재혼에 따른 전혼자녀와의 문제, 양육비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 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수입과 보유재산이 없어 기초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외국인 아내는 혼인에 대한 진정한 의사보다는 한국 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택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국인 남편 역시 외국인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결혼했다는 인식에 기인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갈등이 유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 내담자 및 상대자 특성 분석

외국인 아내 35.9%, 한국인 남편 64.1%로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이 더 많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955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343건(35.9%),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612건(64.1%)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더 많았다.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에 관해 처음 분석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두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이 더 많았다(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06년 14.0%, 2008년 27.2%, 2009년 36.1%, 2010년 29.4%, 2011년 37.5%, 2012년 40.9%, 2007년에는 분석하지 않음). 그런데 2013년부터는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이 더 많이 상담소를 찾았고(한국인 남편 상담 비율 2013년 51.9%, 2014년 51.0%, 2015년 63.2%, 2016년 64.1%), 한국인 남편 내담자의 수가 2006년 17명에서 2016년 612명으로 약 36배 증가하였다. 한편, 외국인 아내의 내담자수도 2006년 104명에서 2016년 343명으로 3.3배 증가해 국제결혼 후 혼인생활에서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초기인 2000년대 중반에는 주로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남편과 시가식구들의 폭언이나 폭력, 무시 등을 호소해왔으나 근래 들어서는 외국인 아내의 외도,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상담을 하러 오는 한국인 남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많아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955명 중 중국이 499명(52.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169명(17.7%), 필리핀 51명(5.3%), 일본 38명(4.0%), 몽골 28명(2.9%), 우즈베키스탄 27명(2.8%), 태국 23명(2.4%), 미국 18명(1.9%), 러시아 17명(1.8%), 카자흐스탄 16명(1.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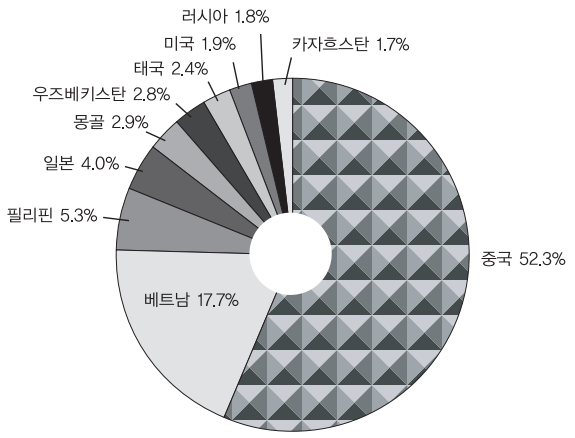

아내의 본국

남편은 40대,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고
남편이 연상인 경우 17~30살 차이가 20.2%에 달해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30대 270명(28.3%), 40대 260명(27.2%), 50대 165명(17.3%), 20대 141명(14.8%), 60대 이상 92명(9.6%) 순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40대 306명(32.1%), 50대 297명(31.1%), 60대 이상 205명(21.5%), 30대 136명(14.2%), 20대 6명(0.6%)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나이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나이가 같은 경우는 58명(6.1%),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803명(84.1%), 아내가 연상인 경우는 63명(6.6%), 미상인 경우는 31명(3.2%)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17~30년 차이가 162명(2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6년 차이 134명(16.7%), 1~2년 차이 101명(12.6%), 3~4년 차이 91명(11.3%), 9~10년 차이 80명(10.0%), 7~8년 차이 70명(8.7%), 11~12년 차이 62명(7.7%), 15~16년 차이 50명(6.2%), 13~14년 차이 47명(5.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6명(0.7%) 있었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30대 캄보디아 여성)

남편과 27살 차이가 나고 결혼한 지 6년 되었다. 나는 남편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고, 내가 말대꾸라도 하면 남편은 무조건 나를 폭행했다. 또한, 남편은 나보다 더 어린 베트남 여자와 외도도 하였다. 현재 5살된 아들이 있는데 남편을 보기만 해도 아이가 불안해해서 일단은 친정인 캄보디아에 데려다 놓았다. 이혼 후 한국에서 아이 키우며 살고 싶다.

한국인 남편보다 학력 높은 외국인 아내 많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모두 고졸[아내 16.9%(161명), 남편 31.8%(304명)]이 가장 많았다. 한편, 대졸 이상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15.4%(147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13.3%(127명)로 여성이 더 많았다.

경제적 능력 없어 빈곤 심각해

외국인 아내는 주부(212명, 22.2%), 한국인 남편은 단순노무(130명, 13.6%)가 가장 많았다. 특히 주부와 무직,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무, 미상을 합한 비율이 외국인 아내는 86.0%, 한국인 남편은 61.9%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92.5%(883명)와 한국인 남편의 80.3%(767명)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담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인 남성)

6년 전 태국 여성과 혼인했다. 나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1년 전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고 있다.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아내와 갈등이 심해졌다. 근래 들어 아내가 하루에 몇시간씩 어딘가 일을 다니는 것 같은데 버는 돈은 모두 자신의 용돈으로만 쓰고 생활비는 무조건 나더러만 내놓으라고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날이 갈수록 아내의 포악이 심해져 이혼하고 싶다.

●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담 사례
(내담자 50대 중국인 여성)

3년 전 한국인 남편을 만나 재혼했다. 남편은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 남편은 일을 해도 한두 달 하다 말고 해서 내가 막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겨우 살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몰랐던 남편의 빚이 자꾸 나왔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내게 돈을 벌어오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딸 집으로 와서 손주를 보고 있는데 남편은 내 딸과 사위에게까지 찾아와 돈을 가져갔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신용불량자였다고 한다. 이혼하는 방법은?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재산보유액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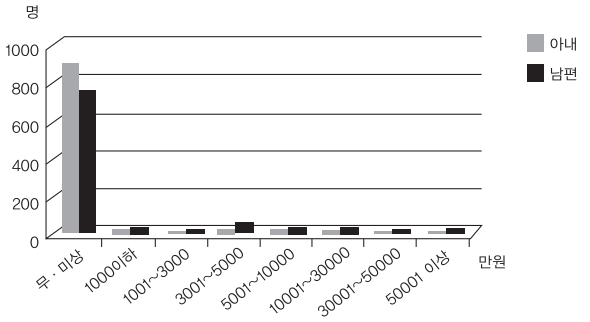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월 수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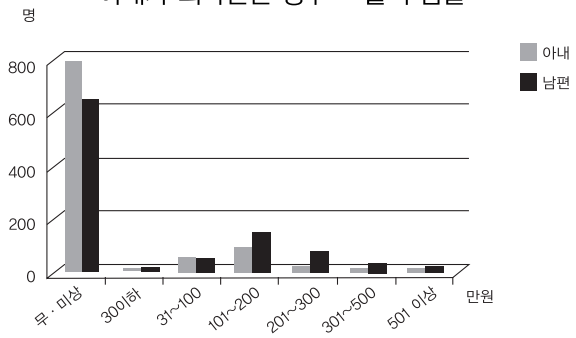

재혼가정 비율 34.2%에 달해
전혼자녀 있는 경우 어려움이 더 커

혼인형태의 경우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33.2%(317명)로 가장 많았고,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7.6%(73명),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4.5%(43명),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22.1%(211명)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친자가 있는 경우는 29.2%(279명)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1.2%(11명), 외국인 아내에게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3.2%(31명)로 나타났다.

여성이 재혼인 경우는 26.6%(254명)[남성 초혼–여성 재혼(4.5%, 43명), 남성 재혼–여성 재혼(22.1%, 211명)]이었고, 재혼한 아내에게 전부소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3.2%(31명)이었다. 외국인 아내에게 전부소생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의 입국이나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 한국인 남편의 조력과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로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에게 억압과 무시, 모욕 등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해왔다. 한편, 외국인 아내의 전혼 자녀를 입양한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아내와 이혼 시 이혼절차뿐만 아니라 파양절차도 밟아야 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가 많다.

● 이혼하면서 외국인 아내의 전혼자녀를 파양하고자 하는 사례(내담자 50대 한국인 남성)

조선족과 7년 전 국제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상대방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다. 결혼 당시 상대방의 자녀가 미성년자였고, 내가 입양을 했었다. 상대방은 1년에 한번 정도 연락을 해오는데 내가 그 번호로 다시 연락을 하면 받지 않고 전화를 바꿔버리곤 했다. 현재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혼하고 그 아들도 파양했으면 한다.

전체의 37.9%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결혼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은 각 4.9%(각 47명), 2년 이상~3년 미만은 5.2%(50명), 3년 이상~5년 미만은 7.7%(74명), 5년 이상~10년 미만은

23.7%(226명), 10년 이상은 24.2%(231명)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37.9%(362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36.5%(13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5년 이상~10년 미만 16.6%(60명), 3년 이상~5년 미만 16.0%(58명), 10년 이상 12.2%(44명), 1년 이상~2년 미만 9.9%(36명), 2년 이상~3년 미만 8.8%(32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간이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고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인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이 총 94명이었고, 그들 중 이미 별거 중인 사람들이 50명에 달했다. 즉,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사람들 중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53.2%이고 이 경우 외국인 아내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총 581명이었으나 이 경우 이미 별거 중인 사람은 312명으로 나타나 별거 비율이 53.7%에 달하였다. 이 경우에도 외국인 아내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별거에 이르게 되어 불법체류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반면, 간이귀화신청 요건을 미리 알고 입국한 후 이를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 여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거 사례 (내담자 20대 라오스 여성)

나는 4년 전 라오스에서 결혼해서 왔는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2년 째 별거 중이다. 나는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하기도 힘들다. 겨우 연락이 되면 남편이 이혼을 해 준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판결문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현재도 남편은 그 여자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소송하는 방법도 몰라 너무 막막하다.

별거 사례 (내담자 30대 한국 남성)

중국 여성과 만난 지 3개월만에 결혼하였는데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다. 아내는 내가 일하러 나가는 것조차 트집을 잡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화를 냈다. 5개월 전 아내가 보름 간 중국에 다녀오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기로 한 날에도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로 나왔다. 경찰서에 실종신고하러 갔더니 아내가 보호센터에 입소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내가 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계획 하에 벌인 일 같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

2. 이혼상담 사유 분석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가출 호소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아내의 가출, 외도 호소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343명)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불성실한 생활, 경제갈등, 무시/모욕, 전과/복역 · 배우자의 이혼강요 등이 우선 순위임)' (민법 제840조 6호)(32.1%, 110명)
2위 '남편의 폭력' (3호)(22.4%, 77명)
3위 '남편의 가출' (2호)(9.9%, 34명)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 612명)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결혼조건속임, 잦은가출 · 대화단절,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경제갈등 등이 우선 순위임)' (6호)(42.0%, 257명)
2위 '아내의 가출' (2호)(26.3%, 161명)
3위 '아내의 외도' (1호)(2.0%, 12명)

외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

외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32.1%(11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호 '남편의 폭력' 22.4%(77명), 2호 '남편의 가출' 9.9%(3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16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여성 내담자(5,009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생활무능력,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45.8%, 2,296명), 3호(남편의 폭력 27.0%, 1,353명), 1호(남편의 외도 14.1%, 707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와 3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아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10명 중 '장기별거'가 22.7%(2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2.7%(14명), '불성실한 생활' 9.1%(10명), '경제갈등' · '무시/모욕' 각 7.3%(각 8명), '전과/복역' · '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5.5%(각 6명), '폭언' 4.5%(5명), '알콜중독' · '애정상실' 각 2.7%(각 3명), '불신' 1.8%(2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거짓말' · '생활무능력' · '도박' · '정신병'을 내세운 이들도 각 0.9%(각 1명)씩 있었다.

기타 사유인 6호 사유를 제외하고는 3호 사유인 남편의 폭력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외국인 아내들이 가장 많아(외국인 아내 중 22.4%) 다문화가정에서도 가정폭력이 주된 이혼사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인 남편들은 외국인 아내의 일방적인 희생과 순종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 아내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폭력도 서슴지 않고 행사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인 남편의 가출, 이혼강요 사례 (내담자 30대 인도네시아 여성)

2년 전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버렸다. 얼마 전부터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연락해 위자료를 주면 이혼해 주겠다고 하였더니 큰소리로 비웃으며 나더러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내가 한국말도 잘 하지 못하니 무시하며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었다. 남편은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고 직장도 자주 바꾼다. 위자료도 못 받고 이혼만 하게 될까 걱정이 된다.

한국인 남편의 폭력, 무시 사례 (내담자 30대 중국 여성)

나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생활비는 삼십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 처음 결혼 후 3년 동안은 하루에 천 원, 이천 원만 주었다.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험한 말을 달고 산다. 또한, 한두 달에 한 번 꼴로 나를 때린다. 남편에게는 오억 원이 넘는 집도 있다. 그런데도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하면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며 그럴거면 니네 나라로 가라고 한다. 더 이상은 무시 당하기 싫어 이혼하고 싶다.

한국인 남편의 폭력, 정신병 사례 (내담자 20대 베트남 여성)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환청과 환시가 있는지 혼잣말을 자주 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것 같았다. 또한, 갑자기 화를 자주 냈고, 내가 한마디라도 대응하면 나를 심하게 폭행하였다. 그러다가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마저 심하게 폭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 2달 전 집을 나왔다. 이혼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한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

한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42.0%(257명)로 가

장 많았다. 다음은 2호 '아내의 가출' 26.3%(161명), 1호 '아내의 외도' 2.0%(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16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성 내담자(1,960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거짓말, 애정상실, 폭언 순 59.9%, 1,175명), 2호(아내의 가출 20.5%, 402명), 3호(아내의 부당대우 11.1%, 217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과 3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남편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57명 중 '장기별거'가 65.8%(16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7.4%(19명), '결혼조건속임' 3.5%(9명), '잦은가출' · '대화단절' 각 2.3%(각 6명),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1.9%(5명), '경제갈등' 1.6%(4명), '거짓말' · '애정상실' · '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1.2%(각 3명), '불성실한 생활' · '도박' · '성적갈등' · '시가와의 갈등' 각 0.8%(각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불임' · '알콜중독' · '폭언' · '잦은 외박' · '성격파탄'을 내세운 이들도 각 0.4%(각 1명)씩 있었다.

아내 폭언, 거짓말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8년 전 혼인하였다. 그런데 아내는 입이 매우 거칠고 성격이 세다. 아내는 내 주변사람들과 나를 수시로 의심하였고, 한번은 내가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왔더니 내 옷가지들을 모두 가위로 잘라놓기도 했다. 수시로 나를 위협하고 막말을 해댔으면서 오히려 경찰에 찾아가 내가 자신을 장난감 권총으로 죽이려 했다며 거짓 신고를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다. 이혼하는 방법은?

아내 가출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베트남 여성과 7년 전 혼인하였고 5세, 3세 두 명의 자녀가 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양육 방법 때문에 갈등이 심했다. 아내는 무조건 자신의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다. 1년 전 아내와 또 심하게 싸웠는데 친정에 다녀온다고 한 후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아이들도 현재 베트남에 있다. 이혼하고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

생활양식차이, 거짓말 사례 (내담자 30대 한국 남성)

필리핀 여성과 2년 전 혼인하였다. 그런데 혼인 초부터 상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주 상담센터를 다녔다. 상대는 매우 게을러 밥도 내가 차려줘야 먹었고 그 외 가사일도 거의 내가 다 하였다. 두 달 전 밥을 차려놓고 불러도 일어나지 않아 상대 볼을 꼬집어 깨웠더니 상대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상대는 내가 수시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쉼터에 입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런 태도로 나오니 나도 이혼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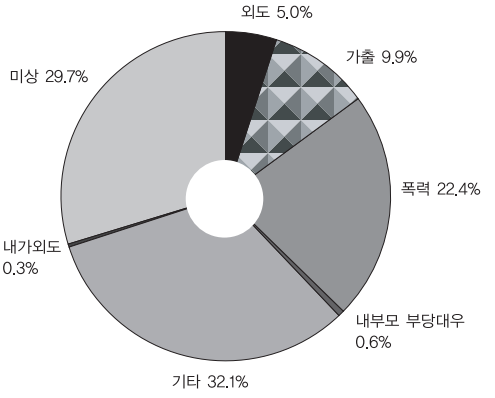

아내가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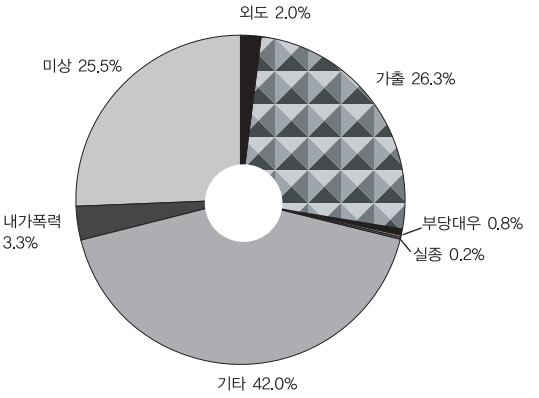

남편이 상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총 1,478건) 중 35.4%(523건)를 차지하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아내가 혼인을 통해 한국에 입국해 가정생활을 하면서 한국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나 열악한 경제여건이나 생활양식 차이, 결혼 조건의 속임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혼에 대한 법적인 정리 절차만 남은 경우가 대부분

한편,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남편의 본국에 따라 상황이 달랐다. 즉,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내담자인 한국인 아내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남편의 본국으로 출국하고자 하였으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출국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남편의 경우에는 한국인 아내와의 결혼을 한국 입국 수단으로만 인식해 실제로는 혼인의 실체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두 경우 모두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이혼에 대한 법적인 정리 절차만 남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외국인 남편보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2.7배 더 많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523건 중 외국인 남편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143건(27.3%), 한국인 아내가 방문한 건수는 380건(72.7%)으로 나타나 외국인 남편보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2.7배 더 많았다.

남편의 본국은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나타나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총 523명 중 중국이 277명(5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국 68명(13.0%), 일본 54명(10.3%), 베트남 15명(2.9%)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동남아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양한 국가의 외국 남성과의 혼인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남편은 한국인 아내의 가출, 외도 호소
한국인 아내는 외국인 남편의 가출, 폭력 호소

이혼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외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32.2%(4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호 '아내의 가출' 10.5%(15명), 1호 '아내의 외도' 2.8%(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이 아내를 폭행한 후 이혼상담을 온 경우도 23.8%(34명)에 달하였다. 외국인 남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46명 중 '장기별거'가 60.9%(28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21.7%(10명), '거짓말' · '생활양식차이' 각 2.2%(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51.6%(19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호 '남편의 가출' 17.9%(68명), 3호 '남편의 폭력' 4.5%(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아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96명 중 '장기별거'가 63.8%(12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8.7%(17명), '애정상실' 4.1%(8명), '경제갈등' · '생활무능력' · '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2.6%(각 5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진영 상담위원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심포지엄 토론문*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신탁제도

조 성 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전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I. 인지(발달)장애인의 상황과 보호의 필요성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가운데 인지장애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한정후견"(민법 제14조),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하여만 가정법원이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 2)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이 그만큼 제한받게 되므로 부모나 자녀 또는 다른 보호자가 당사자를 돌봐줄 수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성년후견인을 둘 필요는 없다(필요성의 원칙, 최후 수단의 원칙).

하지만 발제문의 사례에서처럼 발달장애인은 부모가 질병 등의 사유로 판단능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사망하게 되면 곧바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신탁제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부모가 인지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후의 발달장애인이라 할 것이다.

II. 발달장애인 보호의 방법

1. 부모 생존 시

1) 부모가 인지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

* 지난 3월 16일 본소에서 열린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심포지엄의 내용으로 지난 호에 주제발표를 실었으며 이번 호에 토론문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지면 관계상 각주는 모두 생략하였으며, 본소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2) 부모가 인지능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가. 후견계약

부모는 자녀를 위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법정후견)개시의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민법 제9조)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여 (자신 또는 자녀를 위한)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법정후견보다는 후견계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소위 임의후견이라고도 하는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민법 제959조의 14).

후견계약은 본인이 후견인을 정할 수 있고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제959조의15) 후견감독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법정후견에 비하여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신탁

부모는 인지능력을 상실할 때에 대비해 본인과 발달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법인(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 및 자녀의 신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견과 신탁이 반드시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후견인을 지정했다고 하여 신탁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신탁은 후견인의 재산관리 부담을 경감해주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2. 부모의 사후(대비)

1) 유언

유언으로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위탁한다 해도 본인의 사후 그가 자신의 발달장애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이란 부모의 사후에 자녀가 수익권을 갖는 것을 내용을 정하는 신탁이다(신탁법 제59조). 즉 유언대용신탁은 i)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ii)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탁법 제59조 제1항).

수탁자가 법인(은행 등 금융기관)일 경우는 자연인에 의한 재산 횡령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어 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보인다. 반면 수탁자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지적장애인을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지적장애인을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다.

부모가 모든 재산을 발달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유류분을 허용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3)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부모 등 후견인이 증여한 재산을 금융회사(신탁업자)가 관리하면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현재 중도 인출을 할 경우 과세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중도 인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도개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4)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공공 성년후견제)

발달장애인법은 제9조에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다만 공공성년후견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요건이기 때문에 자칫 가족이 있는 경우는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규정 중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다고 본다면 가족이 있는 경우도 공공 성년후견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소결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생전에 자신의 인지능력 상실에 대비해 (후견계약을 통해) 자신과 발달장애인 자녀를 위한 후견인을 정해 두고, 금융기관에 본인을 수탁자로 한 성년후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사후 발달장애인 자녀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 사후 성년후견인은 가족보다는 공공 성년후견제에 의한 공공기관의 종사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후견신탁의 실무상 쟁점과 관련하여

정 용 신
서울가정법원 판사

1. 발제문 1면 기재 사건 관련

가. 해당 사건 진행 경과(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 2017느단5****)
사건본인 대리인 명의의 항고가 제기되어 항고심에 계속 중임

나. 시사점

-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한 후 청구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사건본인의 복리가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는 미성년자,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 지정, 친권상실 · 정지, 성년후견개시 등의 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63조). 현재에도 위와 같이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가사소송법의 시급한 개정이 요구됨
- 위와 같은 보호방안이 마련된 이후 후견신탁제도와 결합된다면, 사건본인의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실무상 쟁점

가. H은행 유언대용신탁관련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 소유권말소등기) 개요[1]

나. 시사점

- 유언대용신탁계약 체결 당시 위탁자의 의사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계약체결 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완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위탁자는 사망 전까지 언제든지 수익자로 지정된 사후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는바, 사후수익자 변경 당시 위탁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추후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탁계약 당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사후수익자 변경 당시 위탁자의 의사능력 판단 기준을 명시하는 등)

3. 후견제도와 후견신탁제도 결합의 필요성에 관하여

가.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에 대한 발제 내용

나. 발제에 대한 토론 사항

- 우리의 경우 후견신탁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전문가후견인이 사임하지 않고 신상 및 재산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단, 재산 규모가 크지만 친족간 다툼이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과 같이 운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전문가후견인에 대한 보수와 후견신탁계약상의 신탁보수가 이중으로 지출되므로, 전문가후견인의

1) 사건의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보수 감액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바, 후견감독법원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후견인으로 하여금 보수 감액에도 불구하고 후견신탁계약의 체결을 하도록 명령하는 등 사안별로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전문가후견인에 따라 보수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피후견인 재산 관리를 위해 신탁계약 체결에 우호적인 경우 있음
- 발제문 15페이지의 각주 45에 언급된 사안의 경우, 친족간 다툼이 많은 사건으로서 사건본인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해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되었고, 신탁재산은 8억 2,000만 원(이외에 다른 재산도 존재함), 신탁보수는 선취보수 0.7%(계약 기준으로 1회 발생), 후취보수 연1%이며, 후견인의 보수는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바, 신탁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전문가후견인의 보수 감액은 없음
- 후견제도지원신탁으로 인하여 피후견인이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상속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 문제점은 1) 다툼이 심한 사건의 경우 전문가후견인의 지속적 선임과 후견법원의 감독, 2) 다툼이 없는 사건의 신탁계약 + 친족후견인 체제에서는 후견법원의 철저한 후견감독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후견감독에 투입되는 법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성년후견센터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신탁제도

배 정 식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I. 문제제기에 대하여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2015년 현재 65세 이상인구가 13.2%로 약660만 명이며 2026년이 되면 그 비율은 20% 넘게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추이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10만 명에서 2014년에는 약 25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정신적 장애로 인한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 돌봄 장치가 만들어져 제대로 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II. 신탁의 활용 사례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신탁계약이 이뤄지면 대상재산은 재산을 맡긴 사람 (이하 위탁자)의 것도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하 수탁자) 의 고유재산도 아닌 독립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경제적 파산에 이르거나 사망하더라도 신탁된 재산은 원래의 계약목적에 따라 관리 또는 상속이전 될 수 있게 됩니다.

1. 성년의 재산관리 사례

(1) 사례 1 – 치매중증의 80세 홍 님(여)**
(2013년 4월 계약 관리 중)

치매 중증이며 가족은 해외거주 딸과 국내 거주하는 아들. 사업하는 아들이 모친의 자금을 관리하며 병원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딸 입장에서는 사업자금으로 소진될 것을 염려하여 한국방문 때 신탁문의 후 계약하고 지출, 관리하는 사례입니다.

유언대용신탁 계약 후 모친 생전에는 매월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되, 국내 거주 아들은 청구자 역할만 하고 수탁자인 은행에서 직접 자금관리를 함으로써 집행상의 잡음을 줄였음은 물론이고 신탁재산은 오로지 치매 모친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2) 사례 2 – 치매초기의 80세 홍 님(여)**
(2014년 8월 계약 관리 중)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이나 치매초기상태로 관리방법은 사례 1과 동일함. 유언대용신탁계약을 본인이 하고 월 생활비 지급, 의료비 지급 방법 등을 계약으로 정하여 관리하다가 사후 상속인들인 자녀 3명에게 신탁에서 분배하게 됩니다.

관리방법에 이의를 제기한 자녀가 있어 모친으로 하여금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모친의 복리를 위하여 신탁관리가 바람직 한 것으로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현재도 잘 관리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3) 사례 3 – 정신적 장애가 있는 40대 홍 님 (남)**
(2017년 1월 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 관리 중)

어려서부터 정신적 장애가 있는 남자로 최근 성년후견심판을 받았으며 전문 후견법인이 본인을 위한 신탁계약을 하고 주기적인 생활비를 받고 부정기적인 필요자금(의료비, 주거비 등) 역시 은행에서 법원의 허가 하에 지출관리 됩니다.

2. 미성년의 재산관리 사례

사례유형 1 : 부부의 이혼 그리고 미성년자녀들 몫으로 남겨진 자금관리 문제

초등학교 자녀가 있고 친권 및 양육권은 이혼 후 엄마에게 있는 데 아빠 입장에서 아이 명의 예금을 엄마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신탁을 통해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친권자 및 양육권자인 엄마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예금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민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사례유형 2 : 부부의 이혼 후 양육권자의 중병으로 인한 미성년자 보호 고민

본 유형은 미성년자 관련된 상담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진실 씨 사례와 같은 경우들입니다. 유언을 통한 후견인 지정과 신탁계약을 통해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후에도 미성년 자녀들에게 남겨진 재산이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례유형 3 : 평온했던 가정, 부모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미성년자 보호

아파트 화재로 홀로 남겨진 어린 자녀, 여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홀로 된 자녀, 먼 이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사망한 부모와 그 어린 자녀들의 실 사례들입니다.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의 주위로부터의 따가운 시선 부담을 덜 수 있고,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가 남겨놓은 보상금 또는 보험금이 제대로 관리되며 아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사례들입니다.

III. 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언

특히 장애인신탁 제도는 크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첫째 위탁자가 부모로 계약이 가능하여야 하고, 둘째 신탁된 재산 원본자체가 수익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계속 사용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세제혜택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사망시점까지 지속적인 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험신탁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자신의 사후(死後)에까지 그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면서 자녀 자신의 복리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류는 로마법 이래 '후견' 이라는 제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재산의 규모가 커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높아지면서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의 이념과 후견인에 의한 권한 남용의 위험과 같은 여러 장애에 부딪혀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의사결정 대리 제도를 폐지할 것을 각 당사국에 촉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요보호자를 위한 새로운 법기술들을 개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2. 유언대용신탁이나 장애인신탁제도는, 요보호자를 위한 안전하고도 유연한 재산관리장치가 되어줄 수 있으나 영미법에서 연원한 '신탁' 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이

'재단법인'과 '상속'이라는 법제를 중심으로 한 대륙법 체계와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보니 신탁제도의 활성화가 우리 상속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또는 우리 상속법이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에 관해 한 번쯤 의문을 제기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첫 번째 쟁점은 신탁과 유류분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균등상속에 관한 열망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그 폐지나 전면적인 개혁을 쉽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신탁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한다면, 신탁이 유류분제도의 잠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언대용신탁이나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등의 경우에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피상속인이 의도하였던 요보호자의 '생활자원 마련'이라는 목적이 실현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표자께서는 "상증법상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거나 유언대용신탁인 경우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세 면제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한도를 확대하면서 이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완전히 배제하면, 유류분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유류분권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장애인특별부양신탁에 신탁한 경우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0원이 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과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생활해 온 법정상속인에게는 공유재산의 청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탁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정상속인들에게 무조건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근대 민법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신탁법제가 영미법상 철회가능신탁 제도를 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탁자는 미리 철회권을 유보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건을 갖추어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탁계약의 체결 시부터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 사이에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법정상속인 중 1명이 불의의 사고로 거액의 치료비를 필요로 할 수도 있으며, 반면 요보호자는 상태가 호전되어 부조의 필요성이 감소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법」은 신탁자에게 수익자변경권을 부여하였으나,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제도는 자익신탁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변경이 제 때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익자 변경 시 세제에서의 불이익이 뒤따름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신탁의 해지나 수익자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그의 사후에 유류분권의 행사를 통해 다소간이나마 이러한 사정변경이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사안에 따라 그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규제하는 것(17면)이 보다 적절하고 유연한 대처라는 신탁 제도 본연의 특성에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4. 두 번째 쟁점은 수익자 사망 시 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본래 상속은 1대를 기준으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순차적 유증' 내지 '계속적 유증'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조문을 두지 않았습니다. 순차적 유증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단 제1수증자가 유증을 받지만, 제1수증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증목적물이 다시 미리 유언자가 지정해 놓은 제2수증자에게 승계되는 방식의 유증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이러한 내용의 유증을 허용하는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1인의 의사에 후속세대 전부가 구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순차적 유증을 허용하면 제1수증자는 종기가 붙은 소유권 내지 처분권한이 없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는 영구한 처분권한이라는 소유권의 속성에 반하여 물권법정주의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수증자의 처분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순차적 유증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상속법에 관한 위와 같은 다수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개정 「신탁법」은 '수익자연속신탁'이라는 명칭 하에 피상속인이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신 수익권을 받게 될 제2수익자, 제3수익자 등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일본 신탁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조류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민법전 제정 당시부터 이러한 방식의 유증을 널리 허용한 반면, 우리 상속법의 모법(母法)에 해당하는 일본법에서는 여전히 '후계유증'이라는 이름으로 그 허용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일본법의 모법(母法)인 프랑스 역시 이러한 내용의 유증에 부정적이었습니다만, 프랑스는 2006년 민법 개정에 의해 드디어 '단계적 유증(legs graduelles)'이라는 이름으로 순차적 유증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1代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계적 유증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프랑스가 전통적인 상속법의 태도를 떠나 이러한 대변혁을 꾀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제1수증자의 후손의 보호필요성"에 기인하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요보호자에 대한 배려가 드디어 상속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이나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제도와 유류분 제도와의 관계 역시 수익자연속신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신탁재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부터 제외하는 대신, 유류분권리자를 제2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0원으로 만드는 방법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5. 발표자께서 제안하고 계시는 "수익자의 사망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될 때 잔여 신탁재산이 있다면 일정 부분을 공익에 기부하도록 정하는"(17면) 방법도 수익자 연속신탁 제도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일반 유언대용신탁이나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을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으로 연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혹은 역으로 공익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공익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설립자가 지정한 자를 위한 후견활동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장애인특별부양신탁에 비해 그 세제혜택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재산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장애인특별부양신탁에 비해 신상관리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장애 전문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계십니다만(16면), 자산운용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재단법인은 자산운용과 수익창출에 대한 부담이 없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또는 수익자 사망시 신탁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일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국가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공익법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설립자가 지정한 특정인의 이익에 기여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리적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신탁에 비해 기존의 우리 상속법제와 충돌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6. 사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더 큰 과제는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안보다 관리할 재산이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요보호자를 위한 신탁제도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공익신탁 내지 공익법인에 관한 연구도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신탁제도에 대한 토론

전 창 훈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 결정지원센터 부센터장, 변호사

1. 들어가며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재산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발달

장애인 신탁사업은 장기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물적 기반인 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Trusts)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인적, 물적 환경을 형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의 필요성

발달장애인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 공적부조, 소득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갈취 당하거나 이를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다.

신탁은 발달장애인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을 다양한 현실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계획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에서도 이러한 입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신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운영기관의 설립

신탁을 통한 재산관리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서비스이며, 통상 금융기관에서는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보수로 가져간다. 그러므로 비교적 많은 신탁재산을 맡길 수 있거나 신탁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신탁보수가 신탁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하나의 장애가 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이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계획의 설계, 의사결정지원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의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탁운영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이를 위탁하고 국가가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장애인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최근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증여한도를 확대하고, 부모이외의 제3자가 증여를 가능하게 하며, 원본 인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제자는 이러한 방안들 이외에도 장애전문 비영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모가 위탁자로 장애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도 특별부양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향후 특별부양신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렇게 특별부양신탁을 이용하여 배분금을 지급청구하거나 지급받더라도 다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탁배분금의 사용과 관련된 지원체계에서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특별수요신탁의 도입

특별수요신탁은 공적부조에 의한 생계급여, 장애연금, 의료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 이외에 장애인의 경우 이를 초과하는 특별한 수요가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수요신탁은 장애인이 자기 재산을 신탁의 형태로 보유하더라도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공부조에서 수급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일부에서는 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수혜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나 기존에 부모님들이 사용해 오던 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추가적 재정 투여 없이 장애인의 부모, 친족 등의 사적 재산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격과 음주문제 겹쳐 폭력에 이르는 경우 많아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통해 폭력에 대한 의식 및 성행 교정 효과

사건번호 2016버7*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5회, 집단상담 11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자조모임 2회
피해자(딸) 전화상담 1회 등
총 24회 실시

상담기간

2016. 4. 29. ~ 2016. 10. 5.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26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2녀(22세, 27세, 24세)가 있다. 행위자는 직업군인 시절부터 음주문제와 폭언, 폭행이 심하였고, 전역한 이후에는 외박까지 일삼았으며, 3년 전부터는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었다. 행위자가 폭력을 쓰게 된 계기는 큰딸이 대학에 불합격하고 재수를 했을 무렵부터인데, 행위자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대외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욕구가 큰데 이에 흠집이 났기 때문이었다. 자녀의 대학입학 실패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역까지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술만 마시면 이유없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행위자는 2015년 12월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모임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이 약 15cm 정도의 과도 2개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고, 싸움을 말리러 온 또 다른 피해자인 딸을 주먹으로 오른쪽 팔과 배를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 정도의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재작년부터 4~5회 정도 있었다.

행위자는 전혀 음주를 하지 않는다며 음주문제를 축소하였는데, 자신은 대기업 임원이기에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한다며 주간 상담일정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음주문제상담에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개별상담 시에는 피해자인 아내에게 폭력을 쓴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자신이 화가 났다면 아내가 이해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자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또 다른 피해자인 큰딸의 보고에 의하면 처분과정을 이행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둘째 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물건을 집어던지는 수준의 경미한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하였다.

상담이 중기에 이르렀을 무렵, 행위자와 피해자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며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다. 행

위자는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맞서 피해자는 밥과 빨래를 전혀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다. 행위자는 상담현장에서도 비협조적이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집단상담에서도 행위자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가 지적하자, 자신은 죄인이기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데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 의견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상담자가 상담태도 역시 법원에 보고되는 부분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자, 자신은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부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다행히 행위자가 집단상담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자신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음을 반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상담 종결 시점에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서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회사 측에 하게 되었다.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신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환경을 바꾸어보려는 시도에서 상담이 종결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상담기간 중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으나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과 협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행위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자신이 부당한 행동을 하면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사건번호 2016버4**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6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등
총 16회 실시

상담기간

2016. 5. 26. ~ 2016. 11. 24.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6년 되었으며, 전부소생 자녀 1남 1녀(31세, 30세)가 있다. 행위자는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화가 나면 분노조절에 실패하여 심한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이전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 2016년 1월 사건 당일 새벽, 행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년아, *같은 년아' 라는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행위자는 지방 출장 등으로 바빠서 한 달 가까이 상담일정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으나 미리 연락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담위탁처분을 이행하면서 행위자는 단주에 가까운 절주를 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부간 다투는 일이 전혀 없었다. 실제로 피해자와의 관계도 개선되었는데, 피해자는 상담위탁처분을 받게 된 사건 발생 시 행위자와의 결혼만족도가 0점이었다면 처분이 중간정도 이행된 시점에는 90점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행위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행위자는 음주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자신이 자주 참석하는 모임에 단주를 선포하고 술자리 대신 운동을 함으로써 상담이 종결될 시점에는 술자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당뇨가 있는 행위자는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단주에 만족하였다. 행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제재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여 향후 폭력재발 가능성은 희박하며, 음주와 분노를 조절하고 대안의 행동을 모색함으로써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사건번호 2015버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부부집단상담 5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자조모임 1회
부부상담 3회, 부부 교육강좌 2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17회 실시

상담기간

2016. 7. 19 ~ 2016. 11. 21

상담경과

행위자는 재혼, 피해자는 초혼으로 부부는 결혼한 지 3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남(3세, 2세)이 있다. 행위자는 결혼 후 피해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여 갈등이 있었다. 2015년 10월 사건당일 밤, 행위자는 자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대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찬 후 쓰러진 피해자가 호흡이 곤란해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과정에서 못나가게 잡았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본 사건 처리 과정에서 행위자는 접근금지 임시조치(1달)를 받았는데 이러한 법 처분 과정을 통해 행위자의 폭력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피해자는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상담을 통하여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기를 바라며 피해자 자신도 행위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폭력을 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성격차이, 피해자의 음주문제와 폭언 등을 갈등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화 조절, 평상심 유지, 평화적인 의사소통 등을 상담의 목표로 정하였다.

부부는 교육강좌를 함께 수강하였고, 부부집단상담에는 피해자는 자녀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워 행위자만 참여하였으며, 부부캠프에 부부와 자녀 모두 참여하였다. 집단상담에서 행위자는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병든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성격이 다소 독선적이 된 것 같다면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신의 말투가 피해자에게 지시적이고 명령 투로 들리는 것 같다면서 목소리 톤을 조금 높여 말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도 예전과 달리 행위자에게 인사를 건네는 변화를 보였다.

상담 기간 중에도 부부는 다투는 일은 있었지만, 전과 달리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변화가 있었다. 행위자의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행위자가 확실히 전과 달라졌다고 변화를 인정하였으며 부부관계도 개선되었다. 상담 중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비폭력적인 의사소통방법을 인식하게 된 행위자와 피해자가 이를 토대로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으므로 부부관계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번호 2016버7**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4회, 음주문제집단상담 4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자조모임 3회, 자조캠프 1회,
부부상담 1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29회 실시

상담기간

2016. 6. 21. ~ 2016. 12. 15.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27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1녀(26세, 21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6년 3월 사건당일 오후, 집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아들이 최근 직장을 그만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아들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아내)에게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

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결혼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에게 첫 폭력을 하였고, 이후 심각한 폭언이 지속되었으며, 반복적으로 폭력이 발생한데다 본 사건 후 피해자가 이혼을 고려하는 등 부부갈등이 심각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전단지를 붙이는 일 등을 하며 열심히 살려고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잔소리가 심한 점을 갈등요인으로 꼽았고, 피해자는 행위자가 노후 대비책도 없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점을 갈등요인으로 꼽았다. 행위자는 전통적인 한국의 아버지 모습이었고, 피해자는 젊은 날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소리를 내는 전통적인 어머니 모습이었다. 행위자는 자신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였고, 예전에 비해 가사일도 도와주는데 피해자가 왜 불만인지 모르겠다는 식이었다. 음주상태나 가정폭력의 예후,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자기만의 틀에서 나오기 어려운 한계를 보였다. 행위자는 피해자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상책인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행위자는 단주 수준에 가까운 절주를 하게 되었고, 상담 종결 후에도 절주를 다짐하였다. 그리고 교육강좌나 집단상담을 통하여 폭력 및 분노 조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본인의 경험을 객관화해볼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표현의 미숙함으로 자신이 새로 인식하게 된 바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여 향후 부부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도록 격려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집밖에서의 음주가능성과 상담 종결 후 음주가능성을 염려하기에 행위자의 자유의지를 믿어보도록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본인의 의식과 처한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를 극복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절주 등 행동 변화를 보고 이혼의사를 접은 상태에서 상담을 마쳤는데 전과 다른 갈등 대처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고맙습니다

2017년 4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심무순, 유문숙, 이병주, 한정희,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김서암, 김지후, 김태주, 박수열, 박은정, 박효선, 윤원섭, 이혜민, 진승기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미옥, 김진아, 방선영, 이승주, 장주용,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관 님

• 학생 자원봉사

김혜지, 배소희, 변수정, 손지희, 신수현, 이윤복, 장윤서, 정재원, 김수민, 서인우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마음의 힐링과 아이와의 추억을 쌓는 치유의 시간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어 삶을 위해 전진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일 시 : 2017년 3월 31일(금) 오전 9시~4월 1일(토) 오후 3시
- 장 소 : 용인 에버랜드
- 참가자 : 비혼모 62명,
  자녀 62명 (36개월~13세 : 45명/36개월미만 : 17명)
  조은경, 천다라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은정 차장, 이선숙 상담원, 변혜빈 대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주거복지 마이홈센터)
  신형미, 박지성, 황내리, 제갈민정 미술치료사
  (트리인마인드연구소),
  이민지,최정아 무용동작치료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노재광 강사(아하교육컨설팅 대표, 웃음치료전문가)
  애란네트워크 직원 및 탁아 자원봉사자 등 총 186명

새봄을 맞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본소에서는 비혼모 62가정과 함께 에버랜드로 1박2일 캠프를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에버랜드 내에 있는 홈브릿지 캐빈호스트에서 숙박을 하며, 비혼모 가정에 필요한 주거 및 법률관련 강의와 상담을 받았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탁아 및 미술치료, 동작치료, 놀이치료 등의 별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교육과 상담 외에도 주최 측의 배려로 에버랜드 최고 인기 시설인 사파리월드에 패스트트랙으로 입장하여 관람하는 등 에버랜드 직원의 안내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놀이시설 자유이용 및 야간페스티벌 등을 관람하였다. 이번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비혼모 가정에 꼭 필요한 정보와 상담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와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며, 다른 비혼모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리적 · 정서적 지지와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 프로그램 개관

A.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

1.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사 : 박은정 차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주거복지 마이홈센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계획등과 관련한 강의를 하였다. 강의 이후 강사는 주택임대차 재계약상의 유의사항, 임대주택 신청자격 여부 등 참가자들이 처한 상

황에 대해 개별상담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임대주택과 관련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되었고, 특히 강의 후 필요한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2.「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사 : 조은경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가정폭력 등 비혼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을 다양한 상담사례를 들어 강의하였고, 관련하여 간단한 OX 퀴즈를 풀어봄으로써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외국인 부와의 관계에서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문제를 상담하였고, 양육비 판결 후에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상담소를 방문하여 양육비지급 이행을 강제 하는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그밖에도 아이의 성(姓)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소송구조 등 보다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참가자들에게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참가자들은 상담 및 교육 내용이 매우 유익했으며, 특히 상담소에서 배부한 '알아두어야 할 가족법상식' 책자가 매우 유용하다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이야기가 큰 힘이 되었고 현재의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무료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를 알게 되어 든든하다고 하였다.

B.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비혼모들의 교육시간 동안, 자녀들은 연령별로 준비된 아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3.「4~5세 아동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 강사 : 이민지 무용동작치료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강사와 보조교사들은 아동과 노래로 자기소개 및 인사, 내자리 찾기, 오뚜기율동, 딩동딩동 움직임, 풍선치기놀이 등을 통해 아동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밴드를 이용해 줄다리기, 버티기 등의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하고 다함께 패러슈트 흔들기, 힘을 합쳐 그룹원 한명씩 높이 올려주기를 통하여 협력하기와 지지하기를 배우며 집중력과 그룹 내 다른 아동을 서로 배려하는 연습을 하였다. 아동들은 이러한 간접적 사회경험을 통해 사회성 및 자발성을 배울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으나 곧 놀이와 동작에 집중하였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등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되었다.

4.「6~7세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

▷ 강사 : 노재광 웃음치료전문가(아하교육컨설팅 대표)

강사와 보조교사들은 아동과 인사, 유아체조, 원만들기 놀이를 통해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빠른 움직임과 멈춤 등의 동작을 통해 집중력, 통제력을 기르고, 풍선을 이용한 놀이 활동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표현하도록 하여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아이들은 이러한 놀이치료를 통해 또래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정서적으로 교류하여 주위를 배려하면서 적극성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5.「8~9세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 강사 : 박지성 미술치료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진정 멋진 '나'를 만나봐"라는 주제로 자신의 이름을 점토로 표현한 뒤 각종 액세서리로 꾸며주고 완성된 이름판과 함께 '나'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나' 스스로 예쁘고 멋지다고 여겨지는 기억들을 나누고, 진정 멋진 '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이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에게 어울리는 액세서리 만들어

보고 완성된 작품을 착용하여 사진 촬영을 해보고 오늘의 경험을 나누며 수업을 마무리 하였다. 자신을 소개하는 순서에서 머뭇거리거나 낯선 환경과 친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치료자에게 방어적 태도를 취하였지만 다른 아동들이 소개하는 순서에서는 타인에 대한 소개를 돕거나 인기 많은 친구라며 지지하는 등 서로서로가 친밀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보였다. 언어적 표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지만 예술매체를 활용한 표현에는 흥미를 갖고 적극적이고 집중력있게 작품을 완성하였으며 완성된 작품에 만족해하였다. 완성된 작품을 착용한 뒤 사진 찍기에도 즐겁게 참여였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긴장을 풀고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경험을 하였다.

6.「10~14세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 강사 : 신형미 미술치료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내 마음을 색으로 표현하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기존에 만들어진 다양한 그룹의 색 작업을 보며 우리 안의 다양한 감정과 기분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수업을 시작하였다. 아동들은 각자 4가지의 '나만의 색'을 만들어 자신이 느끼는 대로 감정에 충실하여 색의 이름을 정해 발표하고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꼈다. 또한 자신이 만든 물감색을 이용해 주어진 원 안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면서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과 성격, 재능이 있으며, 아직은 잘 모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꿈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대한 아동들의 집중도와 완성도가 높았으며 아동들은 새롭게 경험하는 미술활동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하였다.

7.「용인 에버랜드 체험」

에버랜드에 도착한 직후와 강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용인 에버랜드에서 자녀와 함께 에버랜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버랜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파리월드'와 다양한 시설과 공연을 관람하며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에버랜드 내에 위치한 캐빈호스텔에서 숙박하면서 다음날 오전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점심식사 후 해산 하였다.

□ 참가자들이 필요한 지원이나 바라는 점

- 한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랍니다.
- 한부모 가정을 위한 교육연계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자격의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완화 했으면 합니다.
- 주거복지 혜택이 좀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 양육비이행을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합니다.

□ 정리

강의가 끝난 후 진행되었던 상담 및 설문조사, 후기 등을 통해 비혼모 가정이 겪고 있는 법적 · 경제적 · 제도적 · 심리적 · 사회적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비혼모 가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비혼모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일, 가정, 양육을 병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캠프만으로 비혼모들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과 비혼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으며 육아와 일에 치인 이들에게 꿈같은 1박2일 가족여행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참가자들이 즐거워하던 모습과 귀가버스에 탑승할 때 아쉬워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고, 더 많은 비혼모가정이 다음 번 캠프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은경 상담위원

김OO, 18세

애란원에 입소한 뒤, 처음 참여하는 캠프라서 조금 설레었다. 평소 쉽게 들을 수 없는 너무나 필요한 교육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다. 사실 그동안 너무 힘들고 피곤했지만 여기서 힐링캠프라는 취지에 맞게 힐링을 할 수 있었다.

나는 혼자서 아기를 낳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 고민을 많이 했고 아이에게 아빠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 왜냐하면 나와 내 동생을 약 7년간 혼자 힘으로 키우신 나의 어머니가 그런 시선으로 상처받았고, 나와 동생 또한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엄마로 인해 달라진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고 미혼모인 나와 뱃속에 있는 '건강이'를 도와주실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기죽지 않고 내가 먼저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 건강이도 행복할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곳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용기를 낸 내가 자랑스럽다.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은 것처럼 나도 많은 분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

전OO, 19세

어린 나이에 생명을 품고 내 몸을 챙길 겨를이 없었고, 인터넷에서 태교여행 다니는 것을 보면서 부럽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 1박2일로 태교여행을 갈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다. 나와 비슷한 이유로 모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런 귀여운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큰 힘이 되었다. 중학생 이후로 가보지 못한 놀이동산에 도착해 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며 선생님들께서 우리를 예뻐해 주고 챙겨주셔서 감사했다.

자유시간에 나와 친구들은 마치 아이가 된 것처럼 돌아다니며 꽃구경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다. 나눠준 상품권 덕분에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행복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눈에 띄었고 내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교복입기가 싫었는데 그냥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통해 계속 배움을 유지하게 된 것이 기쁘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라 좋았다. 좋은 엄마가 되라고 응원 받고 가는 것 같아 행복하다.

윤OO, 20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인 저도 아이와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추억 만들기에 들떠서 기다린 시간입니다. 마음 써주신 추억들은 오래도록 저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되겠지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캠프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후원해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분들과 항상 친정 같이 마음의 의지가 되어주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1순위가 에버랜드인데, 이런 기회에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 때문에 엄마들이 에버랜드에서 숙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험인데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행복한 미소가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처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막막했던 그 순간을 견디고 보니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순간이 오더군요. 지금 많이 힘든 엄마들에게도 조금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희를 위해 진행해주신 다수의 프로그램이 모두 뜻 깊은 시간 이었지만 특히 법률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과 주거복지교육이 자립을 꿈꾸는 저에게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엄마, 19세

몇 번째 캠프인지, 아이와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궂은 날씨였지만 오셔서 교육도 해주시고,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당분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솟네요! 퀴즈를 통해 쉽게 가정법률 교육을 해주셔서 필요한 법률 상식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 좋았고 특히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소에 방문하면 된다는 사실에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Q&A 시간을 통해 제 상황과는 조금 다른 사례 들을 들으면서 같은 미혼 엄마라도 여러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사례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양육비 신청은 아직 엄두가 나지 않지만,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언젠가는 용기를 내어 양육비 신청을 해보고 싶어요. 꼭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할 땐 항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이와 열심히 살겠습니다.

조OO, 27세

아이들과 여행을 갈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로 에버랜드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가정법률상담소와 강사님이 직접 오셔서 필요하고 궁금했던 내용을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했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마들이 홀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주택마련 문제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OX 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법률상식을 전해준 강사님 덕분에 지루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배려해주시고, 신경써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많이 내리지 않아서 교육도 듣고, 예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받은 만큼 성장하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상담

Q

저는 한국인이고, 제 아내는 필리핀 국적입니다. 아내는 저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저와 함께 살다가 몇 달 전 사소한 문제로 다툰 후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의 기다림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고향인 인천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외국인의 주소가 한국에 없다면 서울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데, 저는 거리가 가까운 인천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인천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 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에 따라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그 관할을 정하여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아내와 같이 살고 있던 인천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인천가정법원이 이혼 재판의 관할법원이 될 것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좋은 책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2016

루이비통 가방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가방을 '3초 백' 혹은 '지영이 백'이라고 한다는 것을 신문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다. 3초에 한 번씩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 만큼 흔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그쯤에서 내가 아는 지영이들을 떠올려 보았더니 금세 대여섯 명이 되는 것으로 보아 그럴 듯 해 보였다.

소설의 주인공은 82년생 김지영 씨다. 김지영 씨에게는 정지원이라는 딸이 있다. 내게도 알고 있는 김지영과 정지원이 있다. 시집 큰 조카가 김지영이고, 정지원은 친구의 딸 이름이다.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에 태어난 김지영의 서른 네 해 동안 삶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82년에 태어난 여자 아이 이름 가운데 가장 많다는 '지영'과 우리나라 성 가운데 가장 많다는 '김'이 합쳐진 '김지영'이라는 이름의 보편성을 통해 우리 사회 여성들의 삶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지영은 1982년 4월 1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공무원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2녀 1남의 둘째. 두 살 많은 언니, 다섯 살 어린 남동생 그리고 부모와 할머니가 함께 살았다. 이야기는 나나 내 친구 혹은 친구의 친구, 옆집 어딘가에서 있었음직한 일들의 연속이다.

아들만 중한 할머니, 이민 간 형을 대신해 어머니를 모시면서 동생과는 불화하게 된 아버지, 오빠와 남동생의 학업을 위해 중학교 만 졸업하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던 어머니. 이 가정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경제와 문화적 변동, 가치관의 변화 등이 그대로 투영되고, 때로 소설에서 이야기의 근거로 현실의 논문이나 보고서 등이 주석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다종다양한 부업을 설명하면서 주석으로 '김시형 외 『기록되지 않은 노동』(삶창, 2016), 21~29쪽 참고.'를 보여준다. 이 소설이 픽션이 동시에 얼마나 논픽션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지영 씨가 겪는 가정, 학교, 직장, 혼인 생활에서의 이야기들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고 사실적이다. 어떤 대목은 내 첫 직장에서의 이야기 같고 어떤 대목은 내 친구의 시집 이야기 같다. 작품해설에 의하면 이 익숙한 주인공에 대해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 소설의 특수성'이라 한다.

길지 않은 책인데 인상 깊은 대목에 포스트잇을 붙이다 보니 너무 많아서 도중에 그만두어야 했다.

무엇보다 책의 말미, 이 소설 화자인 상담의의 김지영 씨, 자신의 아내, 자신의 직원에 대한 생각과 태도와 결정의 과정은 그 자체로 많은 생각을 던져 준다. 추구하는 혹은 해야 할 바와 현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른다.

이 숙 현 편집부장

상.담.소 . 소.식

본소와 법무법인 로고스, KEB하나은행 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4월 4일 본소는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승국), KEB하나은행(신탁사업단장 김재영)과 본소 대회의실에서 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제한 능력자의 복리를 도모하고 민법상 후견제도를 활성화하여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따른 법률복지 수요를 대비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본소는 성년 및 미성년 후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로고스는 '가사상속센터'를 통한 후견제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KEB하나은행은 다양한 후견관련 신탁상품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성년후견 대상자들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들은 상호 의견교환 및 협의의 성실한 이행, 협약기관 상호 사용 등과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는 양승국 대표변호사,배인구 센터장(가사상속전문센터), 임형민 변호사 등이, KEB하나은행에서는 김재영 단장, 김광식 부장, 김봉수 센터장, 배정식 센터장 등이, 본소에서는 곽배희 소장, 이혜숙 총무부장, 조경애 법률구조 제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 제2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등이 참석하였다.(관련사진 2면)

본소,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과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협약체결

4월 20일 본소와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 집(원장 임도영)은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에서 업무협력 협약(MOU)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본소와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은 이 협약을 통해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협력분야는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지원, 노숙인 신용회복 상담 및 법률구조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등 이며, 그 외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본소의 정연이, 전규선 상담위원과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이일주 일시보호센터 센터장, 조충희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하였다. 본소는 이번 협약으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등에게 법률구조의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 법교육(여의도봄꽃축제)

본소에서는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중 지난 4월 6일 윤중로에서 영등포 경찰서와 함께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행사는 오후1시부터 오후4시까지 실시되었으며,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법률상식 퀴즈, 가족법 개정을 위한 서명, 상담소의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였다. 시민들은 간단한 법 상식 퀴즈를 풀면서 어려운 법률을 쉽게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다며 즐거워 하였고, 상담소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 행사에는 상담소 직원 14명과 자원봉사자 2명, 그리고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관련사진 2면)

교육부,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 실시

본소에서는 지난 4월 14일 서울시와 함께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에는 노숙인 시설이용자 및 시설종사자 80명이 참석했으며, 시설이용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각각 강의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파산 · 면책 및 개인회생 제도(본소 정연이, 전규선 상담위원), 신용회복 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이현주 심사역),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제도(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서주거복지 마이홈센터, 박은정차장), 건강보험관련 제도(국민건강보험공단, 최윤정 과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강의가 끝난 후에 상담을 원하는 교육생들은 파산 · 면책, 신용회복, 주거복지 및 건강보험에 관한 개별상담을 하였다. 파산 · 면책, 개인회생 신청, 명의도용, 핸드폰 미납요금 등의 다양한 법률 상담과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관련 상담, 신용회복절차 및 건강보험료 미납 상담 등이 있었고, 교육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교육과 상담을 전문가에게 직접 분야별로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하였다.

본소, 가정폭력예방지침서 I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수정 보완하여 재발간

본소에서는 2003년 처음 발간된 가정폭력예방지침서 I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마라」의 내용을 개정된 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새롭게 발간하였다. 재발간된 책자는 전국 26개 지부에 배포되었고 향후 필요시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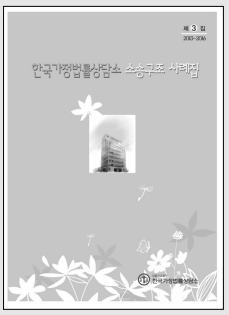

본소, 「소송구조 사례집」 (제3집) 발간

본소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사례집' (제3집)을 발간하였다. 본 사례집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본 상담소 본부에서 처리한 소송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4.4. 학교폭력예방교육7 – 안양초(최수진)
4.5. 학교폭력예방교육8 – 여주 점동초(김진영)
4.6.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1 – 여의도 봄꽃 축제 (조은경, 복미영)
4.10. 학교폭력예방교육9 – 용인 대일초(정연이)
4.11. 학교폭력예방교육10 – 연천 왕산초(김진영)
4.14. 노숙인 신용회복 교육 및 상담(정연이, 전규선)
4.18. 학교폭력예방교육11 – 용인 한일초(정연이)
4.20.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 보현의 집(정연이)
4.26. 학교폭력예방교육12 – 포천 이곡초(오동준)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박소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오동준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4월 20일 서울가정법원 합의부 조정에 참여하였다. 25일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2016년 가정폭력 · 성폭력 법률구조사업 평가회에 복미영 상담위원과 함께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4월 10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4일에는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으며, 26일에는 경찰청 「4대 악 근절」 정책자문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곽배희 소장, 서울가정법원 행사 참석

본소 곽배희 소장은 4월 2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가정 면접교섭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75

우리가 원하는…

글 | 그림 | 장차현실

지·부·소·식

강릉지부

강릉시 지원으로 가정폭력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예방교육을 총 3회(118명) 실시하였다. 4월 11일 법률구조 변호사 간담회(전직원 및 홍지훈, 조영삼, 이현석, 홍영표 변호사)를 실시하였다.

구리지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을 8회, 형사조정을 4회 실시하였다. 23일 구리장자공원에서 가정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장경아,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2회,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총 8회, 광주시법원 총 4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총 4회 실시하였다. 3일 상담소 사례회의(8건) 및 수퍼비전(1건)을 실시하였다. 17일 '안양YWCA 가정폭력피해쉼터 꿈이 있는 집' 과 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다. 문대근, 임재훈, 이혜민, 임상준, 장수혁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총 12회 실시하였다. 부설 보라상담원에서 경찰동행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차명심, 전태우, 홍성민, 임용호, 한두환, 박지훈(수원), 한승일, 강은혜, 최강호, 김소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매주 화요일 14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28일 2017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울산지부

4월 12일 4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익산지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3회 실시하였다. 13일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26일 익산시부송종합사회복지관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상담을 1회, 가사조정을 3회 실시하였다. 14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시청 등에 가정상담지, 리플릿 등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정아람, 진휘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4월 27일 중구청 합동상황실에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위촉식에 참석하였다. 이재경, 김창건, 장상현, 박진석, 임유정, 이영주, 황은하, 여지은, 김종운, 백존익, 심미숙, 이수희, 홍지혜, 고승현, 박수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 · 마산지부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19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재영, 남상업, 고정항, 오유경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4월 27일 이사회 및 직원워크숍을 실시하였다.

2017년 3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7년 3월 한 달 간 접수 · 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3,237건으로 본부가 7,057건, 지부가 6,180건이었다.

본부는 6,437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469건 · 소장 등 서류작성 105건 · 소송구조 46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459건 · 화해조정 607건 · 소장 등 서류작성 37건 · 소송구조 77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437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7년 2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1.5%→1.8%), 부부갈등(1.9%→2.1%), 면접교섭권(1.9%→2.7%), 인지(0.9%→1.7%), 친생부인(1.0%→1.5%), 친생자존부(1.9%→2.2%), 파혼(0.1%→0.5%), 혼인무효 · 취소(0.5%→1.3%), 이혼무효 · 취소(0.3%→0.5%), 입양(1.1%→1.4%), 친양자(0.5%→0.6%), 파양(0.2%→0.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4%→0.5%),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4%→0.8%)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437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356건(21.1%), 전화상담 4,810건(74.7%), 통신 및 인터넷상담 269건(4.2%), 서신상담 1건(0.0%),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7년 4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5,681			
법률상담 (5,272)			
면접	전화	통신	지상
830	4,201	240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02	73	34	

* 2017/4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71,408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합계			
서울(본부)	7,057	1,356	4,810	269	1	지상 1	6,437	469	105	46
강 릉 (033) 652-9555	149	123	21				144		1	4
구리 · 남양주 (031) 551-9976	254	73	88				161	84	3	6
군 산 (063) 442-1560	165	44	82				126	37		2
대 구 (053) 745-4501	537	184	30	5		출장 178	397	136		4
대 전 (042) 520-5258	226	29	190				219		7	
제 주 (064) 753-9421	215	28	177				205	8		2
동 해 (033) 535-0188	116	63	49				112			4
목 포 (061) 273-2514	193		192				192			1
부 천 (032) 667-2314	283	57	198				255	28		
성 남 (031) 707-6661	301	160	80			출장 18	258	37	2	4
수 원 (031) 243-4600	424	133	198	1		출장 71	403	20		1
순 천 (061) 753-9910	208	45	156				201	4	1	2
중 구 (02)2238-6554	243	159	79				238			5
안 동 (054) 856-4200	99	5	29				34	65		
울 산 (052) 246-9568	139	34	98				132		5	2
익 산 (063) 851-5113	265	68	184			출장 7	259			6
인 천 (032) 865-1120	403	212	165				377	10	2	14
전 주 (063) 244-2930	324	143	115	35	26		319			5
정 읍 (063) 535-3705	135	63	55				118	16		1
진 주 (055) 746-7975	136	44	67				111	21		4
창원 · 마산 (055) 261-0280	305	170	86	2			258	44	2	1
청 주 (043) 257-0088	247	70	78				148	90	9	
춘 천 (033) 257-4688	385	66	15	1		출장 298	380	5		
태 백 (033) 554-4004	71	25	35			출장 11	71			
평택 · 안성 (031) 611-4251	117	46	65				111		5	1
제 천 (043) 644-5690	161	39	115				154			7
포 항 (054) 283-7555	79	23	53				76	2		1
지부총상담	6,180	2,106	2,700	44	26	출장 583	5,459	607	37	77
총 상담	13,237	3,462	7,510	313	27	출장 583 지상 1	11,896	1,076	142	123

**2017/3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24,166건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상습 폭행으로 이혼 합의 후 돌연 의사를 철회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5-486

담당 : 권오용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1세)와 피고(남, 45세)는 1998년 12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사건본인들(남 18세, 여 9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의논하지 않고 연금을 자신의 모친에게 지급하는 등 원고와 경제 갈등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수시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고, 기물파손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안면부 좌상, 뇌진탕 등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5년 2월경 이혼을 요구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로 매월 20~30만 원씩 지급하며 위자료로 3,000~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갑자기 이혼의사를 철회하면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인천가정법원 2017.1.6.)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2017. 2. 19. 사건본인2를 피고에게 인도한다.

3. 사건본인1의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2의 양육비로 2017. 3.부터 2026. 11. 6.까지 월 10만 원씩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건본인1과 자유롭게 면접교섭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사건본인2와 매월 둘째, 넷째 주 주말 1박 2일로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사건본인2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각 6박 7일의 면접교섭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다. 면접교섭을 위한 사건본인2의 교통비는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라. 면접교섭 일정과 장소, 사건본인들의 인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원만히 협의하여 정하고, 사건본인들의 복리, 당사자의 생활주기, 기타 사정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만 원을 지급하되, 2017. 1. 11.까지 300만 원을, 2017. 5. 21.까지 400만 원으로 분할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가.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7. 1. 6. 기준으로 각자 명의로 된 적극, 소극재산이 각자에게 귀속함을 확인한다.

6. 가. 인천시 계양구 향교로00 0층의 2017. 1.부터 2017. 2.까지의 차임 월 30만 원은 피고가 지급하고, 2017. 3.부터 2017. 4.까지의 차임은 원고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한다.

나. 원고는 2017. 5. 21.까지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한다.

7.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

를 각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자녀를 자주 방치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한 전 남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조정

법률구조 2016-281

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2세)과 상대방(남, 55세)은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남, 14세)을 두었으나, 2007년 12월 28일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지만, 상대방은 신문사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며 매일 밤 10시경에나 집에 들어왔고, 이로 인해 사건본인을 하루 종일 또는 밤새 어린이집에 맡겨 놓았다. 또한 사건본인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부터 상대방은 영어공부를 강요했고, 어린 사건본인은 밤 12시경까지 공부를 해야 했다. 사건본인이 졸려하면 상대방은 사건본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공부문제로 인한 폭언과 폭행은 사건본인이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16년 5월경에도 상대방이 사건본인에게 폭언을 계속하자 사건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상대방을 신고하였고, 상대방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 날 이후로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함께 지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혼 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구인의 소득으로는 하루하루 커가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웠다. 또한 상대방이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 마다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2.)

1.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과 상대방을 공동으로 지정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친권을 전적으로 행사한다.

가. 입학, 전학

나. 거소지정

다. 여권 발급, 비자 신청

〔다만 단기 여행을 위한 경우만 가능(가급적 학기 중 여행은 지양한다), 해외 체류를 위한 경우는 제외(친권 공동행사)〕

라. 휴대전화 개통, 변경

마. 공공기관에서의 각종 증명서류 발급

2.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3.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가. 2016.11.03. 30만원, 2016.12.10. 30만원, 2012.12.31. 30만원, 2017.1.10. 30만원, 2017.1.31. 30만원을 각 지급하고,

나. 2017.2.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조정조항 5항에 따라 양육자가 변경될 경우 그 전날까지 월 30만원씩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4.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일정: 매월 1회, 첫째 주 토요일 12:00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18:00까지

나. 사건본인의 인도 방법 등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 면접교섭의 일정, 방법 등은 향후 사건본인의 의사, 성장 과정 등에 따라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또는 그 전이라도 사건본인의 의사 등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6. 청구인은 이 법원 2016즈기*** 사전처분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지방법원 2016동서** 불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 대하여 재항고 하지 않는다.

7.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2017년 5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5월 8일 / 5월 22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게임과 퀴즈를 통해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며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의 장벽을 낮추고 시민에 좀더 다가서는 출장 법교육

1.
▶ 일시 : 2017년 5월 20일(토) 오후 1시
▶ 장소 : 과천시중앙공원 야외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장」 내
▶ 내용 : 무료법률상담 및 여성문제 전문상담,
법률구조 · 교육사업 안내, 가족법 퀴즈를 통한
법의식 함양 및 가정폭력 예방 · 양성평등 교육 실시

2.
▶ 일시 : 2017년 5월 27일(토) 오후 1시
▶ 장소 : 서울, 관악구청 「다문화가족 박람회행사장」 내
▶ 내용 :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 교육사업 안내,
가족법 퀴즈를 통한 법의식 함양 및 가정폭력
예방 · 양성평등 교육 실시

한마음 가족캠프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문화형성을 위해 온 가족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는 1박2일 무료 가족동반 프로그램

▶ 일시 : 2017년 8월 26일(토) 오후 4시~8월 27일(일) 오후 1시
▶ 대상 : 부부 동반 참석이 가능한 신청자
(48개월이상 중학생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장소 : 서울 양재동, 더케이(The K)호텔
▶ 신청방법 : 전화로 수시 접수 중
(참여를 원하는 분은 배우자와 먼저 상의하여
참여의사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일시 : 2017년 2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1월, 8월은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5월 25일(목)	관계의 뇌와 사랑
6월 22일(목)	분노의 의미와 기능
7월 27일(목)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9월 28일(목)	전이감정과 부모 세대와의 갈등
10월 26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1월 23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2월 28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II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

(가제)

일시

2017년 6월 23일 (금) 오후 2시 30분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순서

- 인 사 말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상담통계 발표**
- 좌　장 :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가정폭력처벌법의 실무상 문제점」**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토론발표| 고경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정신의학과 원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